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 공고문

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장르별 특화된 축제를 공연예술 장르별 대표 시장(유통)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「**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**」을 공모합니다. 이에 장르별 특화 **축제**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1 사업소개

□ 사업개요

- (사 업 명)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 사업
- (사업목적) 장르 특화 공연예술축제를 공연예술 장르별 시장(유통)
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문화예술 균형발전 견인
- **(사업기간)** 2025. 1. ~ 12.(최대 3개년)
- (주최/주관) 문화체육관광부/예술경영지원센터
- (지원내용) 본 축제 프로그램을 제외한, 시장 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한 장르 특화 스케일업 기획사업 개최 지원(최대 3개년*)
 - * 연도별(25년, '26년, '27년)로 나누어 지원하며,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속지원 여부 결정
- (지원장르) 음악, 무용, 연극, 전통 단일장르 * 뮤지컬 및 대중예술 제외
 - * 음악(실내악, 관현악, 오페라 등), 무용(전통무용, 발레, 현대무용 등), 연극(연극, 미임, 인형극 등), 전통(정악, 민속, 연희, 창작 등)
- (신청주체)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역문화재단 및 축제 조직*
 - * <u>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축제 조직 및 광역·기초 지역 문화재단</u>
 - ** 민간축제의 경우, 지원 대상 조건에 모두 해당할 시 해당 권역의 지역문화 재단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
- *** 지역문화재단이 신청할 경우, 해당 권역 내 최대 2개 축제 신청 가능
- (지원규모) '25년 18억 원(4개 축제 x 4.5억 원)
 - 1개 축제 당 국고보조금 연 4.5억 원(정액 지원)
 - ※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별도 자부담은 연 1억원 이상 확보해야 함. 자부담 내 지방비 연 1억 원 이상, 3년간 총 3억 원 이상 확보 필수(3개년 지방비 편성 확약서 제출)

* 연차별 추진 예시

구분	1년차('25)	2년차('26)	3년차('27)			
목표	B2B 마켓 등 축제 스케일업	국내외 네트워크 확대	시장 거점 브랜드 확립			
	[(3개년 공통·필수) 작품 유통(마켓) 기능 강화] 국내외 프레젠터 초청 프로그램 및 B2B마켓 (쇼케이스, 피칭, 1:1미팅, 포럼,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)					
사업예시	[(<mark>추가·제안) 축제 권역 및 시장 확대]</mark> 관객 개발(프린지, 아카데미, 마스터클래스, 비평 클래스 등), 찾아가는 공연, 신진 예술가 발굴 등					
			상 대상 브랜드 확립] 제학회, 국제협의체 유치 등			
국고	연 4.5억 원, 총 13.5억 원 (최대 3개년 지원,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 지원 여부 결정)					
자부담	연 1억 원, 총 3억 원(최대 3개년)					

□ 추진 일정

- (2. 18.(화)) 예술경영지원센터 공모 공고(e나라도움 및 예경 누리집)
- (2. 28.(금) ~ 3. 14.(금) 17:59) 지역문화재단·축제 조직 공모 신청(15일간)
- (3월 4주) 예술경영지원센터 서류 및 발표심의
 - * 서류심의 결과공고 : 3월 4주 중 예정 (공고: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)
 - * 발표심의: 3월 4주 중 예정 (장소: 예술경영지원센터)
- (3월 4주) 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결과 공고
- (4 ~ 12월) 지역문화재단·축제 조직 사업 수행 및 평가
 - * '25년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후, 평가결과에 따라 '26년 연속지원 여부 결정
- (12월) 지역문화재단·축제 조직 사업 정산 보고

일정	2.18.(화)	2.28(금)~3.14(금)		3월 4주		4~12월
내용	공모사업 공고	공모 지원 신청	\Rightarrow	심의(서류, 발표), 최종 선정	\Rightarrow	- 컨설팅 - 사업 수행 - 지원 및 사업 평가
주체	예경	지역문화재단, 축제 조직		예경		지역문화재단, 축제 조직

2 공모요강

□ 지원 자격

- (지원 대상 조건) 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축제
 - ① 단일장르(음악, 무용, 연극, 전통) 특화 국제 공연예술축제
 - ^② '25년 기준 10년 이상 운영(또는 10회 이상 추진 이력 보유)
 - ③ 최근 3년('23~'25년) 연평균 총예산 10억 원 이상이며, 동시에 해당 총예산 내 공공재원(국고 및 지방비)이 연평균 5억 원 이상
- (신청주체)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지역문화재단 및 축제 조직*
 - *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축제 조직 및 광역·기초 지역 문화재단
 - ** 민간축제의 경우, 지원 대상 조건에 모두 해당할 시 해당 권역의 지역문화 재단과 연계하여 신청 가능
- *** 지역문화재단이 신청할 경우, 해당 권역 내 최대 2개 축제 신청 가능

□ 지원 내용

- (지원규모) '25년 18억 원(4개 축제 x 4.5억 원)
 - 1개 축제 당 국고보조금 연 4.5억 원(정액 지원)
 - ※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별도 자부담은 연 1억원 이상 확보해야 함. 자부담 내 지방비 연 1억 원 이상, 3년간 총 3억 원 이상 확보 필수(3개년 지방비 편성 확약서 제출)
- (지원내용) 본 축제 프로그램을 제외한, 시장 거점으로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기획사업 개최 지원(최대 3개년)
 - (공통·필수) 작품 유통(마켓)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 기획·운영 (B2B마켓, 국내외 프레젠터·바이어 초청, 축제 기간 전·후에 진행되는 유통·네트워킹 프로그램 등)
 - (추가·제안) 그 외 축제가 시장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스케일업 기획사업 제안
 - * [예시] (1년차) 축제 개최 권역 및 시장 확대(축제 활성화 프로그램)를 위한 사업, (2·3년차) 해외 활로 개척 및 브랜드 확립을 위한 사업

○ (기타 안내사항)

- 국고보조금은 연도별('25년, '26년, '27년)로 나누어 지원하며, 연차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속 지원 여부 결정함
- 제안하는 스케일업 기획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
- 민간축제와 지역문화재단이 연계 신청하는 경우, 재단은 국고보조금 및 자부담 교부, 집행, 정산 관리와 사업 협력 추진 의무가 있음
- 본 축제의 프로그램 사업비(공연 초청료, 공연 제작비 등)는 편성할 수 없음
- 필요시, 선정단체(재단, 축제 조직)는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관 기관(예술경영지원센터)과 사업계획 조정·협의 절차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 후, 주관기관(예술경영지원센터)은 스케일업 프로그램 전문가단 별도 구성, 컨설팅 지원 예정임
- * 축제 스케일업 프로그램 예시
- ① 마켓: 축제기간 중, 쇼케이스, 피칭, 프로모션 등을 통한 국내외 프레젠터(프로모터) 대상 유통 확장 등
- ② 부대행사 : 프린지, 콘퍼런스, 아카데미 등 관련 부대행사 추진
- ③ 후속 및 인근지역 확대(1년차) : 본 축제 기간 이후 후속 및 인근지역 연계행사 추진
- ④ **공연시설 연계·협력:** 축제 고유 또는 지역 연계 공연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장르 특화 프로그램 추진
- * (예시) 장르(시설) 특화 국립청년예술단체(오케스트라, 한국무용, 연극, 전통연희) 상주 또는 시즌 프로그램, 공연관광(테마체험)화 개발, 기술융합 랩(LAB) 운영 등

○ (기타 준수사항)

· (공모신청, 심의참석) 지역문화재단·축제 조직에서 공모신청, 심의참석 의무 있음

단계	1단계		2단계		3단계
내용	공모 지원 신청	>	심의 참석	•	(선정 후) 교부·집행·정산
주체	지역문화재단, 축제 조직		지역문화재단, 축제 조직		지역문화재단, 축제 조직

- · (교부신청·집행·정산) 지역문화재단·축제 조직은 사업비 교부신청, 집행 및 정산의 의무 있음
- · (서면 계약 체결) 모든 계약은 서면 계약 체결 필수 * 단, 기존 계약서 양식이 없다면, 문화체육관광부 고시「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」의 계약서 활용 권장
- · (참여예술가 사례비 지급) 공연 참여예술가·스태프·참여 인력의 적정 사례비 지급 * 예산 계획보다 적은 사례비 지급 또는 사례 이후 되돌려받기 등 발각 시 전액 환수조치
- · (모니터링·평가 참여) 사업 선정 시,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참여·협조 필수

- (예산 편성 세부 기준)
- 국고보조금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(기간제), 운영비, 여비 등 편성 가능하며, 본 축제 프로그램의 공연 초청료, 제작비, 운영비 편성 불가

< 예산편성 항목 예시 > (국고보조금 및 자부담 편성 기준 공모신청서 참고자료 참조)

목	세목	국고보조금	자부담(지방비 등)	비고	
인건비 (110)	상용임금(03)	- 상용인력(기간제)	* 총 사업비의 10% 이내		
Octul	일반수용비(01)	- 사업 추진을 위한			
운영비 (210)	임차료(07)	물품 운송비, 임차			
(=15)	일반 용 역비(14)	- 회계검증수수료 (필			
여비	국내여비(01)	- 국내 바이어 초청 관련 비용 등 (교통비, 숙박비 등)		*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	
(220)	국외여비(02)	- 해외 바이어 초청 (항공비, 숙박비 등			

- ※ (국고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) 기존 상근인력 인건비, 단체 및 기관 운영 관련 비용(소모품비, 사무기기 임차료 등), 자산취득비(악기 구입비 등), 회의진행 경비(다과, 식대 등)
- ※ 문화예술분야 용역 활용시 예술인 고용보험료(사업주 부담분) 편성 필수
- ※ 국고 및 자부담(지방비 등) 사업비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여야 함(예치형)
- ※ (회계검증수수료 편성 및 집행)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직·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1억원 이상일 경우 회계검증 필수 * 회계검증수수료 단가 예시 ※추후 변동될 수 있음

총 사업비(국고보조금+지방비 등)	회계검증수수료(원)
4억원이상 5억원미만	1,370,000
5억원이상 6억원미만	1,600,000
6억원이상 7억원미만	1,800,000
7억원이상 8억원미만	2,000,000
8억원이상 9억원미만	2,130,000
9억원이상	2,300,000

3 심의방식 및 기준

□ 심의방식

- 서류심의 → 발표심의 → 최종 선정
 - 서류심의 : 지원 자격 충족 여부 등 제출서류 바탕으로 심의
 - 발표심의 : 스케일업 기획사업 프레젠테이션 발표 심의

□ 심의기준

① 사업 목표의 실현 가능성 (40%)

- 사업목적과 의도에 타당한 기획인지?
- 축제의 스케일업 프로그램 기획이 참신하고 구체적인지?
- 장르 특화 공연예술축제로서 3개년 비전이 명확하고, 실현 가능한지?
- 장르별 시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?

② 사업 수행역량 (30%)

- 사업 계획을 운영할 수 있는 참여 인력 구성,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지?
- 사업 계획을 운영하는 실행 주체(인력 등)의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지?
- 장르 특화 공연예술축제로서 필수 충족 조건을 모두 갖추었는지?

③ 예산 계획의 타당성 (30%)

- 예산 계획 및 책정이 적정한 수준인지?
- 자부담(지방비 등) 투자계획이 적절한지?
- 국고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이 포함되었는지?

4 공모신청 안내

□ 공모신청 방법

- (공고일시) '25. 2. 18.(화) e나라도움,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
- (신청기간) '25. 2. 28.(금) ~ 3. 14.(금) 17:59(15일간), e나라도움
 - *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므로, <u>마감시간 경과 후 제출 불가(</u>신청서 작성, 자료 업로드 중 마감시간이 되면 자동 등록 및 완료 불가)
 - * 필수 서류 내 기재사항 및 필수 제출서류 누락·오제출 시 서류심의 제외
 - * 접수미감 임박하여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, 2~3일 전 접수 권장
 - *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, 장애신고 등은 '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 (1670-9595) 이용'

- (신청방법)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
 - (e나라도움 공모명)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
 - * 지역문화재단이 신청할 경우, 해당 권역 내 최대 2개 축제 신청 가능
 - ** 지원 신청시 사업명은 '(000축제) 2025 장르별 시장 거점화 지원사업'으로 신청
- (신청서류) 지원신청서, 지방비 편성 확약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 제공 동의서 등과 축제의 지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구분	내용
	① 지원신청서 1부
필수	② 지방비 편성 확약서 1부
자료	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	④ 지역문화재단 및 축제 조직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
선택	신청 축제의 기타 증빙 자료(축제·공연 프로그램, '23-'25년 예산서 등)
자료	단증 국제의 기의 증증 자표(국제)증단 프로그램, 25-25년 에덴지 증)

□ 유의사항

- (지원 유의사항) 아래 사항 중 한 곳에 해당할 경우, 지원 불가
 - * 선정 이후에도 지원 불가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
- · 기획재정부「보조금법」제31조의 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
- ·「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」제13조(불공정행위의 금지)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기관 및 개인
- 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7조제2항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(다만,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,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)
- · 성희롱·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다만, 「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)
- · 표절,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
- ·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e나라도움 상 사업등록이 불가한 단체
- · 보조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, 부정수급·미정산 등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반납하지 않은 보조사업자
- · 문화체육관광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등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정된 단체 또는 기관

□ 문의

-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본부 공연해외진출팀
 - (이메일) chj@gokams.or.kr, csk@gokams.or.kr / (전화) 02-708-2283